

총동창회 행위 제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안녕하세요. 2024년 국회의원선거에 관악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울 관악구 소재 성보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만8000여명 성보고 졸업생의 대표조직으로서 동문 간 친목 도모 및 모교 지원 활동을 하는 성보고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는 첨부한 파일(성보고 총동창회 공지글 예시)과 같이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문을 게재하고 이를 메일 등 SNS(사회관계망)를 통해 동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공지문은 통상 동창회장인 질의자 명의로 게재하고 발송합니다. 올해 선거의 해를 맞아 여러 성보고 동문들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기로 해서 이를 전체 동문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공지문을 통해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동문을 소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 공지문을 평소처럼 ‘정태웅 성보고 총동창회장’ 명의로 게재 및 발송해도 됩니까? 아니면 출마예정자인 회장 명의를 빼고 ‘성보고 동창회’ 혹은 ‘이택기 성보고 총동창회 부회장’ 명의로 해야 합니까?
- 2) 출마하는 동문(학교 기수, 이름, 지역구 등)을 모두 소개하면서 질의자를 포함해도 됩니까?
- 3) 출마하는 동문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대학을 포함한 학력과 주요 경력 등)를 포함해도 됩니까?
- 4) 첨부한 파일(5기이강훈동문명함)처럼 동문들의 명함 사진을 포함해도 됩니까?
- 5) 소개글에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까?
- 6) 소개글에 ‘동문들의 성원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까?

- 7) 소개글에 출마 예정 동문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권리당원일 경우 경선 투표에 적극 참여, 일반인 대상 전화여론조사에 적극적인 응답, 후원금 납부 및 세액공제 관련 안내 등을 포함해도 됩니까?
 - 8) 소개글에 출마 예정 동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합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까?
 - 9) 소개글에 출마 예정 동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면서 각 출마 예정 동문의 후원회 계좌 등 주요 정보를 포함해도 됩니까?
 - 10) 소개글에 ‘이번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출마 예정 동문이 있을 경우 제보해달라’ 거나 ‘동문들이 출마 예정 동문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보해달라’ 는 등의 안내 문구를 포함해도 됩니까?
2. 총동창회가 주최하여 동문들을 대상으로 출마 예정 동문 초청 합동토론회 혹은 간담회 등을 개최해도 됩니까?
 3. 총동창회는 매년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올해는 3월 12일(화)에 첫 정기모임을 개최하려 하는데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올해 정기모임과 수시로 비정기모임을 개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 모임에서 각 출마예정자에 대한 정보(기수, 선거구, 약력 등)를 다른 동문에게 소개해도 됩니까?
 - 2) 모임에서 ‘출마예정자가 동문이니만치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며 지지를 호소해도 됩니까?
 - 3) 모임에서 1) 혹은 2)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총동창회 공지문을 통해 알려도 됩니까?
 4. 각각의 성보고 동문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다른 동문들과 1대 1로 하는 대화 혹은 통화(SNS 포함)를 통해 성보고 출신 출마예정자에 대해 소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1) 출마예정자에 대한 정보(기수, 선거구, 약력 등)를 다른 동문에게 소개해도 됩니까?

- 2) ‘출마예정자가 동문이니만치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야 한다’ 며 지지를 호소해도 됩니까?
- 3) 동문들 간 1대 1 대화 혹은 통화(SNS 포함)로 1) 혹은 2)와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면 그 사실을 총동창회 공지문을 통해 알려도 됩니까?

(2024. 1. 8. 입후보예정자 정태웅 질의)

【답】 1. 문1. 1)~6), 8), 10)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동창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회원 동정을 알리는 방법으로 소속 회원(기수, 성명, 선거명)의 입후보사실을 부각되지 아니하게 게재하거나 소속 동문에게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소식 전달 방법과 범위 안에서 메일 등 SNS를 통하여 회원 동정을 소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 범위를 벗어나 동창회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1. 7), 9)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가 소속 회원의 동정을 알리는 수준(후원회의 예금계좌, 연락처 등)에서 안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단순히 안내하는 정도를 벗어나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는 등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의 고지·광고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 제93조,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3.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동창회는 「공직선거법」 제81조에 따라 후보자 등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4.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순히 후보자의 동정을 알리는 수준에서의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개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 내용이 부가되거나 선거공약(정책)을 발표하는 등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 제91조, 제101조 또는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동창회를 개최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5.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동창회명 또는 그 단체의 직명(○○고 동창회 총무 등)없이 개인 성명만을 기재하여 SNS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2024. 1. 10.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